

[무배당 AXA암보험(재가입용)2601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장기질병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AXA암보험(재가입용)2601

3. 보험의 목적

피보험자의 신체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및 가입대상

(1)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약관	암진단금(간편심사)(재가입용)	10년	전기납	50세~90세	월납 연납
		1년~9년		(100-보험기간)세	
특별약관	암사망(간편심사)(재가입용)	10년		50세~70세	
		1년~9년		(80-보험기간)세	
	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간편심사) (재가입용)	10년		50세~90세	
		1년~9년		(100-보험기간)세	
제도성 특별약관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보장제한부 인수 보험료자동이체납입 제재위반 부담보 지정대리청구서비스 만기 재가입 장애인전용보험전환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	-	-	-

주1)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주2) 만기 재가입의 경우 재가입전 소멸된 보장은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하며, 잔여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해당 잔여보험기간 만큼 보험기간 적용함

(2) 가입대상

가. 만기재가입 특별약관에 따라 재가입이 가능한 암보험(장기보험)을 재가입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음.

나. 각 담보별 최초계약의 가입나이(관련 규정 확인용)

구분		최초 가입나이
보통약관	암진단금(간편심사)	40세~80세
특별약관	암사망(간편심사)	40세~70세
	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간편심사)	40세~80세

다. 각 담보별 최초계약의 면책 및 감액기간

최초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으며,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음.

담보명		최초 보험가입 후 면책기간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암진단금 (간편심사)	암	90일	O (1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X	
	암사망 (간편심사)	90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X	
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간편심사)		90일	O (1년)

5.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7.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1) 우량체 할인

재가입전 계약에서 우량체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재가입계약 초회 보험료부터 할인 대상 담보의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함.

[우량체 할인 예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의 건강검진결과서(직전 1년 이내의 검진결과) 또는 건강검진결과서를 기초로 작성한 우량체 할인 조건 충족여부 확인서(제출일 직전 1년 이내의 결과)를 제출하여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회부터 할인 대상 담보의 영업보험료의 5%를 할인함.

가. 고혈압이 없는 경우

- 고혈압 :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나. 당뇨병이 없는 경우

- 당뇨병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 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는 경우

(2) '7.(1)'에 따른 우량체 할인은 기본계약인 '암진단금(간편심사)(재가입용)'과 특별약관 중 '암사망(간편심사)(재가입용)', '5대고액치료비암진단금(간편심사)(재가입용)'에 한하여 적용함.(이하 '간편심사 할인 대상 약관'이라 함)

8. 갱신평약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9.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내로 운영함

10.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를 적용

11.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며,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선납보험료는 해당 계약 해당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함

12.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3.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4.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계약의 적용이율 + 1.5%」로 함

15.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6. 조건부 인수를 위한 특별약관

(1) 특정 신체부위 및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관한 사항

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질병만을 제외한 기타질병을 보상함

나.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음. 다만, 회사가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조건부 등으로 인수가 가능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부담보를 설정(이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17. 만기재가입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재가입 요건, 보장에 관한 사항, 납입 보험료 및 재가입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전화(음성녹음), 서면(등기우편 등), 전자문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며, 재가입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봄

(2) 회사는 최초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의 재가입 조건을 안내하며, 계약자가 재가입 시점에서 아래 재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재가입 직전계약과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이 동일한 가입 조건으로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회사는 재가입을 거절 할 수 없음.

가. 피보험자 연령이 재가입시점에서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나.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 되었을 것

다. 재가입전 계약이 소멸되지 않을 것

(3) 계약자는 '(2)'의 재가입 직전계약 외 회사의 재가입용 판매상품에 추가된 담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을 거절 할 수 있음. 또한, 계약자는 추가된 담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을 제외한 재가입 안내만을 받을 수 있음.

(4) '(2)'의 '재가입 직전계약과 보험가입금액 및 보장내용이 동일한 가입 조건'으로 재가입한 경우 아래에 정한 사항을 따름.

가. 재가입되는 계약은 재가입전 약관을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및

보험료 등을 개정한 경우에는 재가입일 현재의 제도 및 보험료 등을 적용함.

나. 재가입전 계약의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담보의 가입은 불가함.

18. 기타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 운용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함
 - 가.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함
 - 나. 질병 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 다.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내일 것
- (2)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 (3)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대한 안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하는 경우, 회사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4) 판매채널
범용(금융기관보험대리점(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을 통한 판매는 제외)
- (5)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① 적용근거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 ② 적용범위 :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③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
 - ④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함.
 - ⑤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능.
 - ⑥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
 - ⑦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부가하되,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 시 전환 가능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별약관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제도성 특별약관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 특별약관

3. 적용대상계약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

- (1)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자적립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한 계약
- (2)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정산액이 10만원 이상이면서 분할납입금액이 1천원 이상인 계약
- (3)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정산액이 해당 계약의 정산액 발생시점 해약환급금 이하인 계약
- (4) 기본계약이 자동갱신되지 않는 계약
- (5) 단체취급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
- (6) 정산액 발생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의 잔액이 없는 계약
- (7)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계약

4. 적용대상 정산액 및 분할납입금액에 관한 사항

- (1)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 정산액은 해당 계약에서 정산액이 발생한 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각각의 정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단, 자동갱신되는 선택계약의 정산액은 제외함
-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분할납입금액 및 최종분할납입금액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함
- (3)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분할납입기간 중 중도에 잔여 분할납입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직전 분할납입금액 납입일 시점부터 일시납입 시점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비용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함

5. 분할납입기간에 관한 사항

- (1) 이 특별약관에서 분할납입기간은 계약의 잔여 납입기간과 5년 중 긴 기간 이내로 운영함. 단,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분할납입기간을 계약의 잔여 보험기간 이내로 함
- (2) 이 특별약관의 체결 시점에 정해진 분할납입기간은 그 이후에 다시 변경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이 특별약관의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대상계약의 사업방법서 별지를 따름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특별약관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장기 - 제도성 특별약관

2. 보험종목의 명칭 등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특별약관

3. 대상 계약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특별약관(이하 “납입유예특약”이라 한다.)은 보장성 인보험에 해당하는 계약 중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특약’ 대상 상품에 해당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4.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보험계약(이하 “해당계약”이라 한다)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한다)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계약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보험료의 대체납입으로 인하여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체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는 납입유예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는 납입유예 신청시 보험료 납입이 유예될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한다)을 「6개월 또는 12개월」 중 하나의 기간으로 선택해야한다. 이 때, 납입유예기간은 해당계약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주기 이상으로 선택 가능하다.

나. ‘가’에서 정한 「회사가 정한 사유」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납입유예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로 하며, 이하 같다)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이 때, 출산은 유산 및 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다) 기간 중인 경우

이 때,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당시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시에 약관 제6조(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시 구비서류)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1) 이미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신청 이후 취소한 경우 및 다른 제도성특약을 통해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계약 기본계약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기본계약이 보험료 납입 면제된 계약 및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계약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계약 기본계약 보험료 의무납입이 종료된 계약

(3) 보험료 납입연체가 있는 경우. 단,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4)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자동대출납입 또는 전액자동대체납입이 적용된 계약

(5) 중도인출 또는 보험계약대출이 적용된 계약

- (6) 해당계약 기본계약의 잔여 납입기간(기본계약이 갱신형인 경우 기본계약갱신일까지의 잔여 납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단, 기본계약의 잔여 납입기간(기본계약이 갱신형인 경우 기본계약 갱신일까지의 잔여 납입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6개월 납입유예만 신청이 가능하다.
- (7)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을 해당계약 보험료(이하 “납입유예 보험료”라 한다) 총액이 납입유예 신청 시점 해당계약의 해약환급금(단, 보험료의 대체납입으로 인하여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체납입 예정인 보험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단, “납입유예기간 중 갱신형보험의 갱신일이 도래하여 납입유예기간 동안 납입유예 보험료가 해당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유예 신청일 기준의 갱신형 보험의 요율에서 갱신시 연령증가분만 반영하여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 (8)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체납입 예정인 보험료가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경우.

5.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 가. 납입유예를 신청한 경우 계약자는 신청 이후 최초 도래하는 해당계약의 납입 기일부터 납입유예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납입유예기간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하고 계약자적립액 등을 계산한다.
- 나. 납입유예기간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납입유예기간과 동일기간(이하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라 한다)동안 납입유예 보험료를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해야 한다. 이때,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의 보험료란 납입유예 신청 전의 해당 기간 납입기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이하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 다. ‘가’ 내지 ‘나’에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입유예기간 동안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하며, 납입유예기간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적립보험료의 납입을 재개한다.
- 라. ‘나’에서 납입유예기간 중 해당계약 갱신형보험의 갱신일 도래시, 갱신형보험의 납입유예보험료는 갱신일 이전기간에 대해서는 갱신 전 보험료, 갱신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갱신 후 보험료로 한다.
- 마.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유예 보험료와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이때,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서 보험료는 “납입유예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납입유예 보험료 전액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바. ‘마’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항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조항에서의 보험료는 “납입유예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사. ‘가’ 내지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으로 보험료가 납입면제 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납입면제 되기 전까지의

해당계약의 납입유예 보험료 전체를 일시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 보통약관 일반조항의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조항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납입유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 아.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유예 취소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해당계약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또한 납입유예 취소 신청시 납입유예 취소 신청전까지의 납입유예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 자.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납입유예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차.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정상보험료를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유예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한다. 이때, 선납 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납입유예 보험료는 선납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카. ‘자’ 및 ‘차’의 경우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6. 기타

- 가.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및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 감액, 계약자, 납입기간 및 기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나.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및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중도인출 및 중도인출, 보험계약대출 및 중도부가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 다.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및 납입유예 신청 및 처리로 인해 계약에 적용되는 주요사항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한다.
- 라. 회사는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각 지급금에 해당하는 해당계약의 납입유예 보험료”를 각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일시 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 마.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유예를 신청할 때 계약자에게 납입유예특약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특별약관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참조)을 받는다.
- 바. 그 외 기타사항은 대상계약에 준한다.

